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등 공개 확대 〉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45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2024. 6. 24.
3. 회 부 일: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9.24. 제8차회의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 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

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59조의3제1항 · 제2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및 그 재판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미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서 및 그 재판기록에 대해서도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한편, 판결서등 공개 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u>확정 판결서등의 열람</u> · 복사) ① 누구든지 <u>판결이</u> <u>확정된 사건의 판결서</u>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 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 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 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 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 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의3(<u>판결서등의 열람·복</u> 사) ① ----- <u>판결이 선고</u> <u>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u> <u>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u> <u>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에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의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2. 개정안의 입법취지¹⁾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²⁾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가 가능하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가 불가능하고,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반 국민의 판결문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헌법 제109조³⁾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재판 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재판공개원칙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판결문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의 공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⁴⁾

1) 김휘욱·박일환,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1., pp.343.~344.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김주석,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사법정책연구원, 2023., pp9.~11.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임의어 검색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취지가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공개재판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추가적 고려사항

다만,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미확정 형사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안 제59조의3제1항)

2023. 1. 1.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⁵⁾은 미확정 민사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미확정 형사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미확정 형사판결서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려는 것임.

5)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재판은 사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고 당사자 간에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함에 반해,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⁶⁾ 유죄의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등 그 특수성이 있어, 미확정 민사판결서와 달리 형사판결서는 공개 시 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미확정 형사판결서는 공개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음.

예를 들어,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국민 혹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미확정 유죄판결서가 공개되면 피고인의 유죄가 기정사실화 되거나 상급심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⁷⁾

또한,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 및 검사나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상소심에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 변경 및 증거 인멸, 보복범죄의 발생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7) 송오섭, 「판결서 열람·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판결문 공개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9.10.25., p.28.

개정안과 관련, 법원행정처는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공개 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판결서보다 높으므로, 2023. 1. 1.부터 시행된 민사·행정·특허 등 미확정 판결서 공개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판결서 제공(안 제59조의3제4항)

개정안은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⁸⁾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09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⁹⁾은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판결서 열람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는 임의어 검색을 통한 열람 및 복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음.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법원 통합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한 형사판결서 열람·검색이 가능한 상황임.

8) 기존의 경우 판례번호를 알아야 해당 판례를 검색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임의의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임의어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함.

9) 구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09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방식으로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 형사판결서에 대한 손쉬운 접근 허용은 소송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 형사판결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모방범죄의 가능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된바 있음.¹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확정된 형사판결서는 열람 및 복사의 제한사유¹¹⁾가 아닌 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하고,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 우려를 이유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송관계인의 신청¹²⁾이 있어야 함. 따라서, 판결서 공개 전 소송관계인의 확인절차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¹³⁾ 현행 제도하에서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사

10) “판결서 공개 관련 논의사항 정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2018., pp 6..

11)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② (생략)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3) 6p, <법원의 판결서 공개를 위한 비실명조치 절차> 참고

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안 제59조의3제1항의 경우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공개 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판결서보다 높으므로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판결문을 문자열·숫자열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 제59조의3제3항의 경우 공개하는 판결문의 경우,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판결서등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63